

시 민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1342
결재일자	2013.1.1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복지정책과장	복지정책관	복지건강실장
협 조	복지협력팀장		



## 2013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

2013. 1. 15(화)

### 복 지 건 강 실 ( 복지 정책 과 )

작 성 자

복지정책과장 : 최홍연 ☎2133-7310 복지협력팀장 : 신상하 ☎7342 담당 : 임형택 ☎7345

## 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■ ( 참전유공자 ) 무 □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□ ( ) 무 ■
	● 전 문 가 : 유 □ ( ) 무 ■
	● 음 브 즈 만 : 유 □ ( 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■ ( 참전유공자에우 및 지원에관한조례 ) 무 □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홍보 □ 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□ 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■ ( 서울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) 무 □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무 ■
	● 기 업 : 유 □ ( 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□ ( 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□ ( ) 무 ■

# 1. 2013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

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위기 상황에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

## I 추진 근거
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-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(참전명예수당)

## II 추진 경위

- '09.04.02 :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발의(이재홍 의원 외 15)
- '09.07.10 : 제216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(원안가결)
- '09.07.16 : 조례 공포(제4805호)
- '10.03.04 :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(안훈식 의원 외 10)
  - ※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 참전자를 지원대상에 포함
- '10.04.01 :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(원안가결)
- '10.04.22 : 일부개정조례 공포(제4974호)
- '10.07월~ : 참전명예수당 지급
- '12.03.15 : 일부개정조례 공포(제5267호)
  - ※ 참전명예수당 지급 거주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

### Ⅲ

## 추진 계획

### □ 지급대상

- 서울시 참전유공자 현황 : 51,326명('13.1.1 현재)
  - ※ 타 보훈대상자와 중복자를 포함한 참전유공자 현황 : 74,390명
- 만 65세 이상의 「참전유공자」로서,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  - 연령기준 : 주민등록상 생년월일('13.1월 현재 '48.1월 이전 출생자)
  - 참전유공자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법 제5조(등록 및 결정)의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
### 참전유공자 중 제외자(조례 제3조 제1호~2호)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4호·제6호·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
  - 가.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, 6.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
  - 나. 보훈급여(월)
    - ☞ 전상·공상군경 : 상이등급(1~7급)에 따라 2,246천원~335천원
    - ☞ 6.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 : 984천원
  - ※ 무공수훈자로서 무공영예수당(18만원)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
2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(고도장애, 중증도장애, 경도장애)을 받는 사람
  - 가. 고도 716천원, 중증도 529천원, 경도 347천원
3. 「참전유공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제3호에 의거
  - 가.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
  - 나.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
  - 다.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

□ **지급금액 : 1인 월 3만원**(‘13.2월 조례공포후부터 월4만원 예정)

- **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조례(3만원 → 5만원) 시의회 상정 추진(2월)**
  - ‘13.4월부터 4만원, ‘14년부터 5만원

**연도별지급현황(‘10.7월~’12)**

(단위 : 명/백만원)

연도별	합계	‘12년	‘11년	‘10년	비고
대상자	50,773	50,773	49,049	46,367	대상자는 연말(12월) 지급인원 기준 ※ 사업시작 : ‘10.7월
지급액	44,057	18,577	17,217	8,263	

- ▶ 자치구 평균 2,031명(최대 노원구 2,920/최소 중구 813), 월평균 지급액 1,548백만원
- ▶ ‘11.12월 대비 ‘12.12월 1,724명(약 4%) 증가 : 연령도래자(월남전), 신규등록자

□ **지급방법 : 매월 25일 대상자 본인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**

-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
  - ① 대리수령인(배우자, 직계혈족, 3촌이내 방계혈족) 계좌에 입금(붙임 3)
  - ②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: 현금수령증 교부(붙임 4)
- ※ 다만, 본인이 채무불이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

□ **지급기준**

○ **자격요건 관련**

-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등록기산일부터 인정
  - ☞ 소급대상자는 보훈청 등록일을 기준으로 연령 및 거주기간을 파악, 산정
  - ☞ 기준연령(만65세)이 충족하였다더라도 보훈청 등록기산일부터 인정함
-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, 소득초과여부 확인 요망
  - ☞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므로, 수당수령시 자격상실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급여 차감시 선택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(붙임 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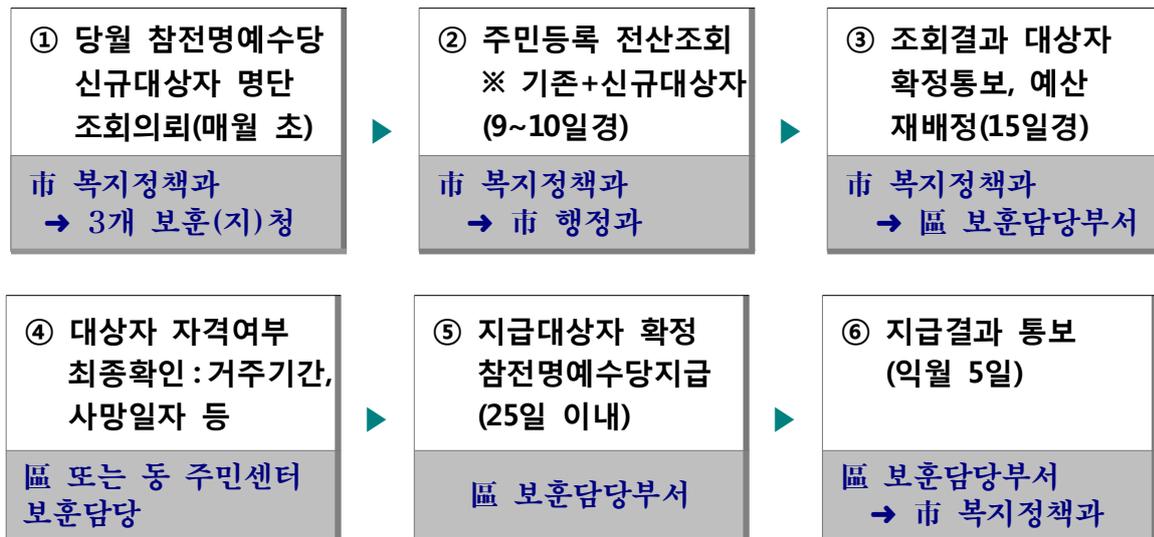
○ **지급일 기준 관련**

- 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
- 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
- 자치구간 전출자 : 통보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
  - ※ 명단 통보 이후에 발생한 구간 전출 사항은 미반영
- 거주요건(3개월) 관련, 전입일이 '13.1.1~1.31인 경우 '12.4월부터 지급
  - ※ 거주요건을 인한 미지급자 명단은 지급월 도래일까지 관리 철저

○ **누락자 발생시 : 수당지급신청서 작성(붙임 1) 및 확인신청(붙임 5)**

- 대상자 여부 확인은 매월 말일까지 신청 → 보훈청 확인 후 익월 반영

**지급절차**



**IV** **소요예산**

**소요예산 : 23,563백만원(전액 시비)**

○ **산출근거**

- 1~3월(3만원) : 4,600백만원, 4월~12월(4만원) : 19,000백만원

○ **예산과목**

-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(정책사업),  
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(단위사업),  
보훈대상자 위문(세부사업), 사회보장적 수혜금(301-01)

**V****행정 사항**

- 각 자치구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중복,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관리 및 지급일 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**
  - 대상자 명단 암호화 관리(붙임 6) 및 외부 유출 절대 금지
- 참전명예수당 지급결과는 익월 5일까지 복지정책과 통보(붙임 6)**
  - 참전명예수당 명단 관리 및 지급현황 점검/각종 건의사항 수렴

- 붙 임**
1. 참전명예수당 지급(수당포기·수당회복)신청서 각 1 부.
  2.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신청서 1 부.
  3.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신청서 1 부.
  4.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증 1 부.
  5.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확인요청서식 1 부(엑셀).
  6. 참전명예수당 명단관리대장 및 지급결과통보서식 1 부(엑셀).







**붙임 3**

제 호		<b>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신청서</b>			처리기간	
					3일	
지급 대상자 (신청인)	성명		생년월일(성별)			
	주소			전화번호		
				휴대전화		
	신청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				
	대리수령기간	년 월부터 년 월까지( 월간)				
※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						
법정 대리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	전화번호		
				휴대전화		
대리 수령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
	지급대상자와의 관계			전화번호		
	주소			휴대전화		
지급계좌	금융기관		계좌번호			
『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제5조에 의거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						
				년 월 일		
신청인(법정대리인)			(서명 또는 인)			
대리수령인			(서명 또는 인)			
○○구청장(동장)			귀하			
구비서류 :						수수료
1.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 가.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 나.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.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.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					없음

제 호		<b>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승인서</b>				
지급 대상자 (신청인)	성명		생년월일(성별)			
	신청사유			대리수령 지정기간	년 월부터 년 월까지( 월간)	
대리 수령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신청인과의관계
	주소			의		
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.						
구청장(동장)			직인			
			년 월 일			

**붙임 4**

<b>교부용</b>		<b>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</b>		
수령자 인적사항	성명		전화번호	
	주소			
수령일자 및 수령액	급여 내용	참전명예수당		
	수령일자	20 . . .	수령액	(원)
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
수령자 : (서명 또는 인)				

절취선

<b>보관용</b>		<b>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</b>		
수령자 인적사항	성명		전화번호	
	주소			
수령일자 및 수령액	급여 내용	참전명예수당		
	수령일자	20 . . .	수령액	(원)
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
수령자 : (서명 또는 인)				